

"등산과 산악스포츠는 한국인의 보편적 체육복지!"



(사)대한산악연맹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**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규교육 27회차 개최 안내**

1. 시·도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**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**」이 개정·시행(2021.06.09.)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(인공암벽장)에는 **안전관리요원 교육**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.
3.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「**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**」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명: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규교육 27회차

나. 교육일시: 2025년 08월 26일(화)

다. 교육장소: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(예정), ※모집 마감 후 세부장소 개별 통지

라. 교육대상: 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(관리자 및 직원)

마. 접수기한: 2025년 08월 20일(수), 12:00 까지(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가능)

바. 접수방법: 온라인접수(<https://naver.me/G029J2Kp>) **선착순 70명**

※ 온라인접수 및 참가비 입금 순, 확정자 개별 통지

사. 참가비: 1회 1인 / 100,000원

아. 입금계좌: 수협은행 1010-2122-7341, 대한산악연맹

※ 관련법령

- ▶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안전·위생 기준)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안전관리요원 배치,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(具備)**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·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.
- ▶ [별표 6] 안전·위생기준, 2.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, 나. 인공암벽장업 (1)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(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**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**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)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.
- ▶ [부칙] <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, 2021. 6. 9.> 제2조(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.

※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,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

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신규교육 요강 1부. 끝.

(사)대한산악연맹회장

수신 시·도연맹 회장, 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 및 관리자

★주임 이동화 부장 박원선 사무처장 07/18 권상수

협조자

시행 (사)대한산악연맹-2258 (2025.07.18.) 접수 ()
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106호 / http://www.kaf.or.kr

전화 02)414-2750 /전송 02)419-2750 / kockaf@kaf.or.kr / 공개